

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산학협력현장실습 교내 실습기관-실습생 모집 안내문

□ 현장실습이란

-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

※ 교육부-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조 1항

□ 현장실습 운영조건

<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>

□ 제4조(현장실습 운영 원칙)

-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,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.
-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.
-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.
-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1.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
 2.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,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
 3.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
 4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
 5.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
 6.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□ 모집 개요

구분	내용
모집대상	· 본교 전학년 재학생(편입생 포함)
제외대상	·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졸업불가자, 조기졸업자, 휴학생 등 ※ 정규교과목 동시학점 이수 불가 ※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인턴 및 채용 등의 합격자는 현장실습 불가
모집인원	· 제한 없음(약 70명 내외)
선발방식	· 실습기관에서 희망하는 학과 및 자격소지자 우선(그 외 선착순) · 실습기관과 학생의 전공이 상이할 경우 선발되지 않음
실습형태	· 1일 8시간(전일제), 15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
실습기간	· 2023. 9. 1.(금) ~ 2023.12.21.(목) / 기간 내 15주 ※ 실습기관 모집기간 : 6.29.(목) ~ 7.12.(수) ※ 실습생 신청기간 : 7.17.(월) ~ 7.28.(금)
실습지원비	· 표준형 : 학교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25% /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매달 151만원 이상 · 자율형 : 학교 실습지원비 4주 10만원 /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4주 48만원 이상 *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% 이상일 경우에만 실습기관에 지급 ※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별로 상이함

※ 실습기관 정보는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(신청기간 내)

□ 모집 유형

구분	내용
B 유형	대학(센터)에서 실습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
D-1 유형	학부(과)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생을 제안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
D-2 유형	사업단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생을 제안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

□ 모집 일정

B유형(일반유형)	D유형(학부(과)/사업단 유형)
· 실습기관 접수기간 : 6.29.(목)~7.12.(수)	·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기간 : 7.29.(목)까지
· 실습생 모집기간 : 7.17.(월)~7.28.(금)	· 모집현황 공문제출 : 7.30.(금)까지
· 확정발표 : 8. 3.(목)	

※ 학부(과) 및 모집 현황 제출 : 7.30.(금)까지 공문 제출(붙임 서식 활용)

※ 위 기한까지 모집현황 공문 미제출 시, 산학협력현장실습 학점인정 불가

※ 모집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

□ 학부(과) 및 사업단 유형 모집절차

구 분	일 자	내 용
실습기관 모집	7.29.(목)까지	· 학과 및 사업단 담당자는 모집된 실습기관에게 현장 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하기 계절제 산학협력 현장실습 수요조사 신청 안내 ※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접수기간 내 신청 ※ 접수기간 이후 학과/사업단에서 모집한 기관이 현장 실습지원센터와 중복될 경우 신청 불가
실습생 모집		· 모집된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하기 계절제 현장실습 신청안내, <u>모집현황 제출 전 학생의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작성 완료</u> ※ 현장실습 매뉴얼 참조
실습기업-실습생 모집현황 제출	7.30.(금)까지	· 모집현황 제출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매칭 ※ 매칭 이후 학생은 실습기관 정보 확인 가능 (학생에게 협약서, 수업계획서, 기업정보 확인 안내 요망)
지원신청서 제출	8.24.(목) 16시까지	· 선발 완료 후 (예비)실습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출력, 지도교수 승인(서명)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
사전교육	8.23.(수)	· 사전교육 실시
방문점검	실습기간 내	· 학부(과) 및 사업단에서는 실습기간 내 최소 1회 실습기관 방문점검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함 ※ 방문점검 양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배포(자유양식 가능)
방문점검 보고서	11.30.(목)까지	·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(fieldwork@jbnu.ac.kr)로 제출
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	1월 말	· (현장실습지원센터) 학점인정 및 학교 실습지원비 지급 ※ 큰사람포인트 일괄처리(15주 100점) · (사업단) 실습기관에게 실습지원비 지급

※ 사업단에서는 학교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표준형 월 기준 최저임금의 25%(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% 이상일 경우에만 실습기관에 지급)

※ 학부(과) 및 사업단에서는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요건 및 실습생 지원사항(실습지원비, 통근버스, 기숙사, 중식비 등) 정확히 확인 후 진행

□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시 주의사항

○ 실습기관 모집(붙임.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참조)

- 실습기관 1개사 당 실습생 3명 이내 매칭 권장(※공공기관 제외)

※ 규모가 작은 실습기관에 실습생을 다수 매칭할 경우, 민원발생률 높음

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표준형 월 기준 최소 151만원 이상, 자율형 4주 기준 48만원 이상 지급 및 실습생 중식지원(실습지원비 별도) 권장
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 - ※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실습기관 협조요청
 - ※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
 - ※ 학과(D-1) 및 사업단(D-2) 유형 실습기관 실습지원비(자율형)는 매 4주마다 10만원 이상*
 - * 학과 유형 : (예)융합기술공학부, 사업단 유형 : (예)첨단부품커플링사업단
- 실습기관-실습생 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가능
 - ※ 단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
- 실습기관은 수요조사 신청 시, 수업계획서 내용에 의거하여 요구 사항(전공, 학과 등)을 상세하게 입력(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작성)
- 실습생 모집(붙임. 실습생 모집 안내문 참조)
 - 모집대상 : 본교 전 학년 재학생(편입생 포함)
 - 제외대상 :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졸업불가자, 조기졸업자, 휴학생 등
 - ※ 정규교과목 등 동시학점 이수 불가능
 - 인정학점 : 산학협력현장실습 교과목 / 일반선택 1개월 3학점, 8주 6학점
 - 실습지원비 : 학교 실습지원비 자율형 4주기준 10만원 /
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표준형 월 151만원 이상,
자율형 4주기준 48만원 이상
 - ※ 표준형 학교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100% 이상일 경우 실습기관에게 지급(학생에게 지급하는 별도 학교 실습지원비 없음)
 - ※ 학과(D-1) 및 사업단(D-2) 유형 실습기관 실습지원비(자율형)는 매 4주마다 10만원 이상
 - ※ 학교(학과/사업단) 실습지원비 지급 예정일을 실습생에게 사전 안내 필요 (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지원비 지급일과 다를 수 있음)
 - 실습기관 수업계획서 내용과 무관한 전공자(학생)는 선발 및

실습진행 불가

(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4조 제2항)

- 학생 개인이 실습기관을 발굴하거나 공채 인턴 형태로 기업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, 현장실습 참여 불가

(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6조 제1항 제1, 2호)

- B(기본)유형에서 D(학과, 사업단)유형으로 사후 전환 사양

※ D유형의 경우 방문점검 및 실습기관, 실습생 관리는 해당 학과 및 사업단에서 진행

□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
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 3. 9.

-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- 위 해석에 따라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
□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
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에 따라 현장실습생도 2018. 9.11.부터 **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**

- (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 의미·범위)
 -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
 - 단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
- (가입방법)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「근로자 고용신고서」 제출(일반근로자의 고용신고와 동일)
 -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
- (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) 현장실습생이 받는 **모든 금품**에 대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
 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30만원일 경우, 30만원×업종별 보험료율
 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무급일 경우, 0원×업종별 보험료율
- (신고·납부 미이행시 적용·제재) 산재발생시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 급여의 50%, 보험료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%가 징수됨
- (보상범위·수준)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
 -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
- (산재발생 시 사업주 배상범위)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됨

□ 학부(과) 및 사업단 방문점검 안내

- 학부(과) 및 사업단 현장실습 지도교수 및 담당자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(교육내용, 실습환경, 근태상황, 애로사항 점검 등)
 - ※ 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9조 제7항
- 방문점검 보고서 작성 후,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
 - ※ 양식 변경 불가
 - ※ **제출기한 : 2023.11.30.(목)까지 / 이메일 송부(fieldwork@jbnu.ac.kr)**

□ 학부(과) 및 사업단별(조교) 홈페이지 가입 및 사용 안내

-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조교 가입

※ 내용 : 신청기업 및 실습생 확인, 실습기관-실습생 매칭정보, 협약서, 지도사원 보기 등

□ 산학협력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

-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, 실습 전 3자 협약까지만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며, 실습 중/후에는 현장실습 일지(책자)를 통해 운영됨



□ 기타사항

- (예비)실습생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시, **현장실습 실습일지**(현장실습 제반서류/출석부, 보고서, 평가표, 만족도 조사 등을 하나로 모은 책자) 배포
- 큰사람포인트(15주 100점) 적립
 - ※ 실습종료 후 1개월 이내, 실습생 큰사람포인트는 **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입력**
- 산학협력현장실습 졸업자격으로 인정(모험활동 분야, 15주 이상)

- 실습 중 실습기관-실습생 민원은 1차적으로 학부(과) 및 사업단에서 확인 후 조치, 현장실습 요건 및 학점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실습 지원센터로 문의
- 실습기간 내 실습생 상해보험(학교) 및 산재보험(실습기관) 가입
※ 산재보험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 모집안내문 참조
- 학과/사업단에서는 모집된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요건 및 실습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내

□ 문의처 :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

- 건물위치 : 건지원(1-10건물) 2층 (1층 Coopsket 편의점 건물)
- 전화/팩스 : 063) 219-5328~9 / 063) 219-5212

